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

Temporary Outdoor Services Checklist

신청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 직원이 요청 사항에 따라 추가 항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제출항목 없이는 허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허가서는 온라인 (<https://epicla.lacounty.gov>)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수 제출 항목 (REQUIRED ITEMS)

1. 수수료 (Filing Fee) - \$234

수수료는 전자체크, 데빗카드, 또는 크레딧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2. 특별행사/ 임시 야외 서비스 허가서 (SPECIAL EVENTS PERMIT – TEMPORARY OUTDOOR SERVICE APPLICATION)

허가서 항목 1 번부터 7 번까지 완성하십시오. 허가서는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이 위치한 곳의 토지 소유주가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증명 서류 (PROOF OF OWNERSHIP)

해당 부지 소유주가 LLC, 법인, 조합, trust 인 경우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25% 이상의 모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와 공식 소유주의 해당 법적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4. 컬러 사진(COLOR PHOTOGRAPHS)

해당 부지와 야외 서비스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이상을 제출해 주십시오.

3. 도면(SKETCH/ PLANS)

다음은 보여주는 간단한 도면을 제출하십시오:

- 기존 시설과 빌딩 치수, 사용되는 주차시설 (해당 부지 혹은 그 외의 부지 포함), 야외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장소.
-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 주차시설, 도로 구분.
- 테이블, 의자, 가구, 장비 등의 전반적인 배치.

도면 준수사항 (SKETCH/PLANS SHALL DEPICT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은 연계된 요식 업체의 실내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주차공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연계된 업체의 주차공간 50% 까지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 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 내 도보는 야외 서비스 공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은 연계된 업체로부터 차도에 의해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차도나 주차장 내 차량 후진 공간 또는 적재 구역 (loading zone) 으로부터는 최소한 10 피트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도로를 제외한 부지 내의 차도는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주차시설 내에 일반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은 물리적 장애물 (barrier)을 사용하여 차도나 주차 구역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어서 차량이 야외 서비스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이 공공 도로나 차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공공 도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물리적 장애물로 명확히 사용 공간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물리적 장애물로는 연방 정부가 허가한 교통 바리케이트 등이 있습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에 있는 조명은 인접한 주택이나 농경지에 직접 비추지 않도록 조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 내에는 아래에 명시된 가구, 물품, 장비들만 비치 가능합니다.

- 테이블
- 의자와 벤치
- 다음과 같은 날씨에 대비용 구조물이나 도구
 - 차도, 장애인 (ADA) 주차공간, 장애인(ADA) 주차장 도보에 드리우지 않는 우산이나 파라솔. 이러한 물품은 바람이나 우연적 사고로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받침대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함.
 - 최대 120 평방피트의 그늘용 구조물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에 설치되는 비품과 장비가 도보나 주차시설과 연결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임시 야외 서비스 공간에 설치될 비품과 장비가 COVID-19 주 시행령과 그에 관련된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안내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Reopening Protocol for Personal Care Establishments: Appendix R](#) and [Reopening Protocol for Hair Salons and Barbershops: Appendix H.](#))

주차공간과 주차장 도보를 포함한, 현행 미국 장애인법 (ADA)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사항 전체를 보시려면 임시 야외 서비스 관련 카운티 안내지침 (TEMPORARY OUTDOOR SERVICES GUIDELINES)을 참고하시고 추가 관련 질문은 REGIONAL PLANNING 으로 해주십시오.

zoningldcc@planning.lacounty.gov or (213) 974-6411

320 West Temple Street • Los Angeles, CA 90012 • 213-974-6411 • TDD: 213-617-2292

@LACDRP | planning.lacounty.gov